

전자상거래에 의한 관세인하의 경제적 문제

최병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술경영연구소

The Economic Problems of Tariff Reduction Induced by E-Commerce

Byoung-Chul Choi

ETRI -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E-mail : cbc@etri.re.kr

요 약

인터넷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이를 기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 경제활동은 기존 산업부문 전 범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이미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또한, 일부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향후 세계경제의 흐름이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거래관계를 대체하며 관련 산업에 여러 측면에서 막대한 파급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국경이 없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경우 국제거래 활성화로 인하여 기존의 수출입 부문에 있어서 급변이 예상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산업의 새로운 시장수요 창출은 물론이고 기존의 시장수요를 촉진하는 측면에서도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지대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거나 영상자료 등을 검색할 때에 조세는 누가,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관세는 어떻게 부과하고 징수할 것인가 등등 전자상거래는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EC와 관련한 조세문제에 대한 국제적 주요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특히 EC의 관세부문에 논의 초점을 맞추어 EC에 의한 관세인하 및 무관세화가 각국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간단한 게임과 소국경제를 가정한 부분균형분석모형을 이용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I. 서 론

인터넷 사용의 증가와 함께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는 경제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상거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경제규범들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상당부분 국제거래의 모습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문제는 국제논의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거나 영상자료 등을 검색할 때에 조세는 누가,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관세는 어떻게 부과하고 징수할 것인가 등등 전자상거래는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향후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전세계적인 네트워크 인프라의 구축은 물론, 전자상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각국의 각종 제도의 정비 및 표준화와 규범화가 뒤따라야만 한다. 이미 주요 선진국과 OECD, WT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전세계적인 확대·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수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오늘날 이러한 논의들이 국제규범으로 가시화 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는 기존의 국내적 및 국제적 과세체계와의 적합성 문제 및 각국의 세수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도 관세부문은 세계 각국이 상당한 합의를 보고 있다. Digital goods는 인터넷상에서 국경을 초월하여 현재에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7년 4월 WTO에서 정보기술협정(ITA :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이 타결됨에 따라 정보기술관련 상품의 무관세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과세문제에 대한 논의동향을 살펴보고, 특히 관세부문에 논의 초점을 맞추어 전자상거래로 인한 무관세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전자상거래와 과세문제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상거래와 그 특성에서 많

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가의 과세행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 시킨다. 한 경제행위에 대해서 과세하기 위해서 세무당국은 과세 가능한 경제행위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인해서 그 과세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전자상거래는 경제행위의 물리적 위치에 대한 사용자 통제능력을 결여시키고 있다. 둘째, 인터넷 사용자의 신분확인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전자상거래에서는 거래정보를 보고 및 확보하는 기관을 이용하는 경향이 감소되어 과세상 근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진다.

1. 소비세 분야의 문제점

1) 부가가치세

국제적인 세무 원칙은 직접세의 경우 “물리적인 존재”, 부가세의 경우 “회사 설립 장소”와 같은 가시적인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에서는 부가가치세에 적용되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서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대해 납세의 무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공급장소를 어디로 볼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다.

우선, 공급장소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기존 상거래에서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그 특성상 공급되는 곳에서 즉시 소비되는 것으로 보고 서비스의 공급장소에서 과세하여도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합당한 과세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출현으로 공급자는 소비자의 소재지국에 가시적인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도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에 적용되는 기존의 고정된 장소의 개념은 전자상거래의 과세에 있어 충분히 포괄적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나아가 기존의 공급장소 및 사업장소의 개념규정을 수정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OECD는 1998년 10월 오타와 회의에서 디지털 제품의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지국 과세를 원칙으로 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소비지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구별 문제를 들 수 있다. 즉, 음악·영화·소프트웨어 등이 통신망을 통해 전자신호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 재화의 수입으로 볼 것인지 서비스의 수입으로 볼 것이냐가 문제가 된다. 부가가치세에서 재화와 서비스는 구별하여 과세된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신문이나 책이 인터넷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 경우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재화는 물리적 실체(physical identity)를 잃게 된다.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의 분류의 문제점은 사업자가 그들의 상품을 서비스로 판매하거나 그 반대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과세회피를 시도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나, WTO·OECD 등 관련 국제기구들이 디지털 제품의 거래를 재화가 아닌 서비스의 거래로 간주하기로 함에 따라 이 문제는 거의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의 유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서비스들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가 복합된 신종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구분에 따라 과세권이 달라지므로 유형분류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EU의 공급장소의 원칙에 따르면 통신이나 방송서비스의 경우 공급자의 소재지국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 기술자문서비스나 데이터 프로세싱, 정보서비스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소재지국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고 있다.

2) 관세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른 관세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상거래에서 관세부과 대상이던 재화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주문되고 인터넷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거래수단별 과세 차별의 문제가 생긴다.

둘째, 우편주문이나 전화주문의 경우보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환이 용이하므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주문이 늘어나 기존매체를 통한 거래를 급속히 대체하게 된다면 관세(부가가치세)수입은 급속히 감소할 것이다.

당초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와 관련하여 국가간 이동이 전자신호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말자는 미국의 입장과 과세체계의 이중성을 이유로 온라인 제품에 대해서도 파일의 용량에 따라 관세(비트세)를 부과하지는 EU의 입장이 대립하였으나, EU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위축과 전자상거래와 일반 정보거래를 구분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1997년 7월 ‘본선언’을 통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새로운 조세도입 반대의 원칙을 천명함에 따라 WTO 제2차 각료회의(1998년 5월, 제네바)는 세계 전자상거래에 관한 선언문을 통하여 전자적인 거래에 대한 현재의 무관세 관행을 잠정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향후에는 전자신호 형태로 이동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과세 기술상의 어려움 때문에 무관세 관행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동일물품에 대한 과세체계의 이중성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2. 소득세 및 국제조세 분야의 문제점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국제적 과세원칙의 적용을 매우 어렵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 국제조세 과세원칙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예

상된다.

우선 소득세의 관련하여 디지털화된 정보의 재생산 및 유포가 기술적으로 용이해짐에 따라 현재의 소득구분 원칙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이는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는 것을 무형재에 대한 특허권의 사용허가(사용료 소득)로 볼 것인지 서비스(사업소득)로 볼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의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은 소득의 발생지국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반면 사용료 소득은 원천징수 되어 사업소득이 사용료 소득에 비해 유리하게 과세된다.

다음으로, 소득세는 기업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소득이 발생한 고정사업장이 설치된 곳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제조세의 일반적 원칙이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기업들은 외국에 고정사업장 및 자회사 등 특별한 경제활동의 거점을 갖추지 않고도 얼마든지 현지의 고객을 상대로 현지에 실재하는 것처럼 사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국제 과세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고정사업장 등이 존재하지 않아 현지국이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자회사를 설치한 다국적기업의 경우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다국적기업의 모든 개별회사를 연결하는 인트라넷 등을 구성하여 기본적으로 과세당국에 노출되지 않고 많은 거래들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보 전송의 즉각화 및 국경의 제거로 과세당국이 국제거래를 파악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비교 가능한 거래 확보의 어려움으로 전통적인 이전가격 결정 기준 즉, 개별 국가들의 이전가격규정과 OECD가 제정한 이전가격 지침의 적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III. 전자상거래에 의한 관세인하 효과

1. 단순한 게임에 의한 분석

본 장에서는 두 개의 국가만이 존재하는 단순한 세계를 상정하여 두 국가가 교역에 있어 동일한 지위에 있는 경우 폐쇄경제, 완전자유무역체제, 수입관세 부과정책의 세 가지 경우에 있어 각국의 생산량, 시장가격, 소비자 잉여, 기업이윤 및 국민후생을 간단한 게임에 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일반모형

우선 국가 1과 국가 2 두 개의 국가만이 존재하고, 각국에는 그 국가를 대표하는 독점기업이 존재하며 규모에 대하여 수확불변인 생산기술을 사용하여 한 재화만을 생산한다고 가정하자. 구체적으로 기업 i (여기서 $i = 1, 2$)가 생산량 Q_i 만큼을 생산하는데 드는 총생산비는 cQ_i 이다.

국가 1의 대표기업 기업 1은 Q_1 만큼 생산하여 이 중 d_1 은 국내시장에서 내수용으로 판매하고 나머지 f_1 은 국가 2에게 수출한다. 즉 $Q_1 = d_1 + f_1$ 이다. 동일한 방법으로 국가 2의 대표기업 기업 2의 생산량은 $Q_2 = d_2 + f_2$ 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국가 1의 재화시장에는 국내기업에 의하여 내수용으로 생산된 d_1 과 국가 2로부터 수입한 f_2 만큼이 공급될 것이다. 국가 i 에서 재화의 시장가격은 P_i (원)이며, 국가 i 의 시장수요함수를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자.

$$P_i = a - (d_i + f_i) \quad (\text{단, } a > c) \quad \dots\dots ①$$

국가 1에서의 재화가격은 시장수요함수에 의하여 $P_1 = a - (d_1 + f_2)$ 가 되며, 국가 2에서 재화의 시장가격은 $P_2 = a - (d_2 + f_1)$ 이다.

기업 1의 이윤은 내수시장에서의 판매수입과 수출시장에서의 판매수입을 합한 총수입으로부터 내수용 및 수출용 재화를 생산하는 데 들어간 총비용을 뺀 값이다. 그런데, 기업 1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재화는 단위당 P_1 씩의 가격을 받으며, 국가 2로 수출한 재화는 단위당 P_2 씩의 가격을 받으므로 기업 1의 이윤은 기업1의 선택변수인 d_1 및 f_1 의 함수로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begin{aligned} \Pi_1(d_1, f_1 | d_2, f_2) &= (P_1 - c)d_1 + (P_2 - c)f_1 \\ &= (a - c - d_1 - f_2)d_1 \\ &\quad + (a - c - d_2 - f_1)f_1 \end{aligned} \quad \dots\dots ②$$

기업 2의 이윤도 동일한 논리에 의하여 유사하게 정의된다.

한 국가의 후생은 국민들이 소비로부터 얻는 소비자잉여와 기업이 국외로부터 벌어들이는 이윤에 비례한다. 정부가 외국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인 관세수입 또한 국민후생에 기여한다. 한편 국내기업이 외국정부에 지불한 관세는 국내기업의 이윤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 1의 후생을 식 ③과 같이 정의한다.

$$\begin{aligned} W_1(t_1 | d_1, f_1, d_2, f_2) &= \text{소비자잉여} + \text{기업이윤} + \text{관세수입} \quad \dots\dots ③ \\ &= \frac{1}{2} (d_1 + f_2)^2 + \Pi_1 + t_1 f_2 \end{aligned}$$

여기서 t_1 은 국가 1이 외국기업(기업 2)에게 부과하는 수입관세율이다. 또한 시장수요함수가 식 ①과 같이 선형인 경우 소비자 잉여의 크기는 $\frac{1}{2} \times (\text{총소비량})^2$ 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a = 12$ 및 $c = 0$ 으로 가정한다.

2) 폐쇄경제체제

두 국가가 모두 폐쇄되어 수출입이 완전히 봉쇄되어 있는 경우 $f_1 = f_2 = 0$ 이며 $Q_1 = d_1$ 이다. 이 조건을 식 ②에 대입하면 기업 1의 이윤함수는 아래의 식과 같다.

$$\Pi_1(Q_1) = (12 - Q_1)Q_1$$

기업 1의 이윤극대화 필요조건은 양변을 Q_1 으로 미분하면 $\frac{d\Pi_1(Q_1)}{dQ_1} = 12 - 2Q_1 = 0$ 이므로, 이를 풀면 국가 1에서의 소비량은 6단위, 시장가격은 6원, 소비자잉여는 18단위, 기업이윤은 36원임을 알 수 있다. 국가 1과 국가 2는 모든 점에서 동일하므로 국가 2에서의 소비량, 가격, 소비자잉여, 기업2가 벌어들이는 이윤도 정확히 각각 6, 6, 18, 36이다. 끝으로, 각국의 후생은 54(=18+36)이다.

3) 완전자유무역체제

두 국가간에 무역이 완전히 자유로운 경우 각국에서의 생산량, 가격 및 국민후생을 분석해 보자. 운송비 등 거래비용은 없으며, 관세나 보조금도 일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기업 1의 이윤함수는 다음과 같다.

$$\Pi_1(d_1, f_1) = (12 - d_1 - f_2)f_1 + (12 - d_2 - f_1)f_1$$

이윤극대화의 필요조건은 기업 1의 이윤함수를 d_1 과 f_1 에 대하여 각각 편미분하면 얻어진다.

$$\frac{\partial \Pi_1}{\partial d_1} = 12 - 2d_1 - f_2 = 0$$

$$\frac{\partial \Pi_1}{\partial f_1} = 12 - d_2 - 2f_1 = 0$$

동일한 논리와 방법을 기업 2의 이윤극대화에 적용하면 위와 유사한 두 식이 도출되고, 이를 연립하여 풀면, 개별기업의 내수 생산량, 수출량, 이윤은 각각 4, 4, 32이며, 개별국가의 총소비량, 시장가격, 소비자잉여는 각각 8, 4, 32 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유무역체제하에서 개별국가의 후생수준은 64(=32+32)로서 폐쇄경제체제하의 후생수준 54보다 크다.

4) 수입관세의 효과

이번에는 자국에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국가 1은 무역상대국의 기업 2가 자국에 수출

하는 f_2 에 대하여 단위당 t_1 (원)의 관세를 부과하며, 반면에 국가 2는 기업 1이 자국에 수출하는한다고 f_1 에 대하여 단위당 t_2 (원)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자. 이 경우 기업 1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begin{aligned} \Pi_1(d_1, f_1 | d_2, f_2, t_1, t_2) &= (P_1 - c)d_1 + (P_2 - c - t_2)f_1 \\ &= (12 - d_1 - f_2)d_1 + (12 - d_2 - f_1 - t_2)f_1 \end{aligned}$$

이를 d_1 과 f_1 에 대하여 각각 편미분하여 기업 1의 이윤극대화 조건을 구하고, 동일한 논리에 의하여 기업 2의 이윤극대화 조건을 구하면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모두 네 개의 방정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방정식을 풀면 다음과 같이 적정 내수생산량과 수출생산량이 구해진다.

$$d_1^* = \frac{1}{3}(12 + t_1) ; f_1^* = \frac{1}{3}(12 - 2t_2)$$

$$d_2^* = \frac{1}{3}(12 + t_2) ; f_2^* = \frac{1}{3}(12 - 2t_1)$$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해 주는 내수생산량과 수출량을 각 국가의 시장수요함수 및 각 기업의 이윤함수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시장가격과 극대화된 이윤이 아래와 같이 도출된다.

$$P_1^* = \frac{1}{3}(12 + t_1)$$

$$P_2^* = \frac{1}{3}(12 + t_2)$$

$$\Pi_1^* = \frac{1}{9}(12 + t_1)^2 + \frac{1}{9}(12 - 2t_2)^2$$

$$\Pi_2^* = \frac{1}{9}(12 + t_2)^2 + \frac{1}{9}(12 - 2t_1)^2$$

이 값을 식 ③에 대입하면 국가 1의 후생함수는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W_1(t_1, t_2) &= \frac{1}{18}(24 - t_1)^2 + \frac{1}{9}(12 + t_1)^2 \\ &\quad + \frac{1}{9}(12 - 2t_2)^2 + \frac{1}{3}t_1(12 - 2t_1) \end{aligned}$$

후생을 극대화하는 t_1 값을 구하기 위하여 이식을 t_1 으로 미분하면, 후생을 극대화 해주는 세율은 국가 1, 2 모두 4임을 알 수 있다. 이제 이 값을 위에서 얻어진 식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개별기업의 내수생산량, 수출량, 이윤은 각각 $\frac{16}{3}$, $\frac{4}{3}$, $\frac{272}{9}$ 이며, 개별국가의 총소비량, 시장가격, 소비자잉여, 후생수준은 각각 $\frac{20}{3}$, $\frac{16}{3}$, $\frac{200}{9}$, $\frac{520}{9} \approx 57.8$ 임을 알 수 있다.

이제 양국가간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어떠한 국가도 수입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자. 관세철폐하에서 각국이 누리는 후생은 64이다. 이는 관세장벽하에서 각국이 누리는 후생수준 57.8보다 크므로 모든 국가들은 관세가 철폐된 자유무역체제하에서 더 높은 후생을 누린다. 그러나 국가 1은 관세를 철폐한 반면 국가 2는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정책을 유지하는 경우 즉, $t_1=0$, $t_2=4$ 일때 국가 1의 후생은 49.8(약 50)로 현저히 낮아지고, 국가 2의 후생은 72로 높아진다. 이러한 상황을 전략형 게임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은데, 그 보수행렬을 보면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국가 2	
		관세철폐	관세유지
국가 1	관세철폐	64, 64	50, 72
	관세유지	72, 50	58, 58

그림 1. 무역정책의 게임

현실세계에서 WTO나 OECD와 같은 집단자유무역체제는 수출장벽을 모든 국가가 동시에 철폐할 때에만 세계 모든 국가의 후생이 증대된다는 논리에 입각한 것이다.

2. 소국경제에서의 관세인하 효과

이번에는 앞의 경우와는 달리 두 국가가 서로 다른 지위에 있는 경우 소국경제에 있어 관세인하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부분균형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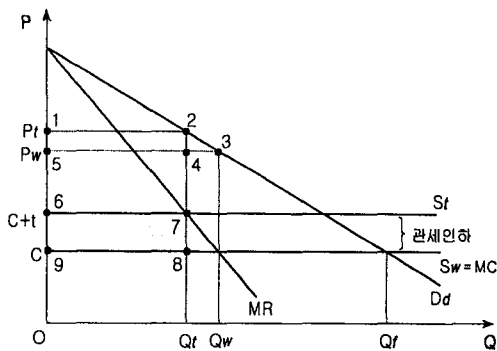


그림 2. 관세인하 효과

[그림 2]는 소국경제에 있어 외국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선형수요함수의 경우를 보여준다. 이제 t 만큼의 종량세가 부과되었다고 가정하자. 관세는 독점의 한계수출비용을 $c^* + t$ 로 올려 P_f 의

가격을 부과하고 Q_f 만큼 수출한다. 이제 관세가 전혀 없다고 하자. 그러면 독점은 가격을 P_w 에서 결정하고 Q_w 만큼 수출한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은 점 12345의 안쪽부분 만큼 증가한다. 반대로, 정부는 점 6789사이에서 해당하는 tQ_f 의 관세수입을 잃게 된다. 순후생효과는 잉여의 증가와 관세수입 손실 사이의 차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수요곡선이 선형일 때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한계수입곡선 기울기의 절반과 같다. 따라서 점 1245사이의 영역은 점 6789 영역의 절반과 같다. 즉, 점 6789사이의 영역은 점 12345사이의 영역보다 크다. 이것은 관세인하가 국가전체의 후생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량세를 가정하는 경우, 관세인하는 우선 정부의 재정수입의 감소를 가져온다. 그림의 점 6789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다음으로, 관세의 인하는 국제수지측면에도 영향을 미친다. 관세인하는 수입수요를 증가시키는 반면 수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국제수지를 악화시킨다. 그림에서 관세인하로 인한 수입(import)이 관세부과 시의 Q_f 에서 Q_w 로 증가하여 그만큼 국제수지가 악화된다.

또한, 관세인하로 인한 수입품의 가격하락은 수입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반면 해당상품이나 대체상품의 국내생산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소득과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유발한다. 그리고 특정상품에 대한 관세인하는 그 상품의 수출국과 수입국 양국의 가격에 영향을 미쳐 교역조건을 변화시킨다.

IV. 결론

관세인하는 수입품의 가격하락으로 수입국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넓혀주고, 소비자잉여를 증가시키며 장기적으로 경제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수입국의 재정손실과 국제수지의 악화를 초래하고 수입국의 국내생산을 감소시켜 소득과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현재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국가간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지만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만약 디지털 재화를 비롯한 유형재에 대한 교역의 비중이 커져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또한 국가간의 합의에 의해 무관세화가 확대되면, 앞에서 논의한 무관세에 따른 각 효과들은 상당히 커질 것이다. 즉 무관세로 인해 각국간의 무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면, 수입재로 인한 대체재의 증가로 인해 국내의 수요와 공급은 대단히 탄력적이게 된다. 이 경우,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에 의한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더 커질 것이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정보화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적 격차를 확대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이 세계 전자상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반면, 세계 각국은 여전히 초고속망과 같은 인프라조차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이 같은 사실은 전자상거래의 세계에서 기존의 남북문제와 같은 교역의 불평등이 똑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정보화 선진국들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 주장에 앞서서 후진국들에 대한 정보화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의 과세행위는 한 나라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경비를 조달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과세규모의 과다에 대한 논의는 가능하나 그 존재의 필요성은 전자상거래라고 해서 부인될 수 없다. 전자상거래가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소량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질 때 단일 사업자의 누적 거래량은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적절한 과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 큰 세수 손실을 야기시킬 수 있다.

증가하는 전자상거래와 이로 인하여 달라지는 경제환경 속에서 관세정책을 포함한 조세정책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기존의 조세제도가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발전에 장애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면 이를 확인하여 제거함과 동시에 신기술을 이용하여 세무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도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정책의 중요한 역할일 수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세계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서는 관세를 비롯한 전자상거래가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각국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전자상거래가 국제무역질서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해 나가는 이 시점에서, 만약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 나라 경제는 제도약을 위한 수단과 방법 중에 중요한 하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유찬 편, 「조세정책에 대한 OECD의 논의와 대응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8, 2.
 [2] 김유찬, 이성봉,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12.
 [3] 정영현, 심재진 역, 「전자상거래의 조세정책적 함의」, 한국조세연구원, 1997, 4.
 [4]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1999년 8월호.

[5] Elhanan Helpman and Paul R. Kurgman, Trade Policy and Market Structure, The MIT Press, 1992.
 [6] Whinston, A. B., and D. O. Stahl, and S. Y. Choi, The Economics of Electronic Commerce, Macmillan Technical Publishing, 1997.
 [7] OECD, COMMITTEE FOR INFORMATION, COMPUTER AND COMMUNICATIONS POLICY MEASURING ELECTRONIC COMMERCE, OECD/GD (97)185.